

2025. 4. 25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 요구안

2025. 4.

사회적금융포럼

www.socialfinanceforum.net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며

차기 대한민국 정부는 크고 거센 변화가 교차하는 시기에 전과 달리 ‘선진국’의 지위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와 국제 질서의 다극화 흐름, 경제체제 안에서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적 진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크고 힘든 과제일수록 길을 찾아내려는 희망으로 서로를 믿고 함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과제들은 복잡한 구조로 작동되고 있어 더 이상 하나의 접근으로 명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추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의지를 가진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일상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해 기성 체제가 작동을 멈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이 따뜻한 연대의 원리로 행동하는 시민과 손을 잡고 혁신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사회입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규모와 속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몰리지 않고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문제해결의 주체로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포괄 원칙으로 사회 곳곳의 난제를 극복하며 공정하고 인간적인 경제를 실현해 갑니다. 그간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 연대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천하면서 안전망 확충, 일자리 보존,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성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이해관계자 협력으로 키워 온 다양한 모델은 달라진 세상에 필요한 혁신의 씨앗입니다. 지속가능개발의 원형입니다.

사회적 금융은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금융의 힘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 의제와 지속가능금융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순환시키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금융입니다.

지자체·정부가 노력하고 ESG 담론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자금공급은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정책은 협동조합·비영리 법인 접근성 제약, 인증 사회적 기업 기피, 성장자금 및 프로젝트 자금 공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전환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에 충실한 자원 마련과 사회적경제의 강점을 구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관 협력으로 사회적 금융을 위한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시민 투자자 육성 등으로 공공·민간의 사회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금융의 혁신 기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금융기관들은 거친 전환의 시기에 풀뿌리 주체들의 주도적 대응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혁신의 맹아를 발굴하고 임팩트를 증폭시키는 동반자로 활동하며 관성을 부수고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9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2025. 4.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9대 과제

추진 전략

- I.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자원 확충
- II.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 III.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금융 활성화

#자원확충 #중개기관육성 #연대금융활성화

전략 I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자원 확충

- 과제 1. 민관 협력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 공급
- 과제 2.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으로 공익법인 사회투자 참여 지원
- 과제 3.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및 자금공급 촉진

전략 II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 과제 4.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신설 및 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 과제 5.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근거법 제정 및 지방정부 시행 지원
- 과제 6.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전략 III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금융 활성화

- 과제 7. 지역, 업종, 분야별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원
- 과제 8. 신탁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허용
- 과제 9. 사회투자 시민참여 활성화 목적의 세제혜택 제공

1. 민관 협력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 공급

1. 현황 및 필요성

- 인구노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전염병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개입 효과성을 높이려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경제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중요
 - 세수 확대 절차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초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부머 은퇴, 지방 소멸 현상은 개별 정책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 괜찮은 일자리 창출, 위기 대응 탄력성을 지닌 사회적경제 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는 통합돌봄, 시민발전, 사회주택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지만, 활동 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함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확산으로 보건, 복지, 에너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친화적 정책환경이 마련되고 있지만 자본력 부족과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민주적 거버넌스, 배당제한 및 이익의 재투자 등 사람중심 경제조직의 특징이 벤처투자 등 성장자금 조달에 어려움 초래

2. 정책 요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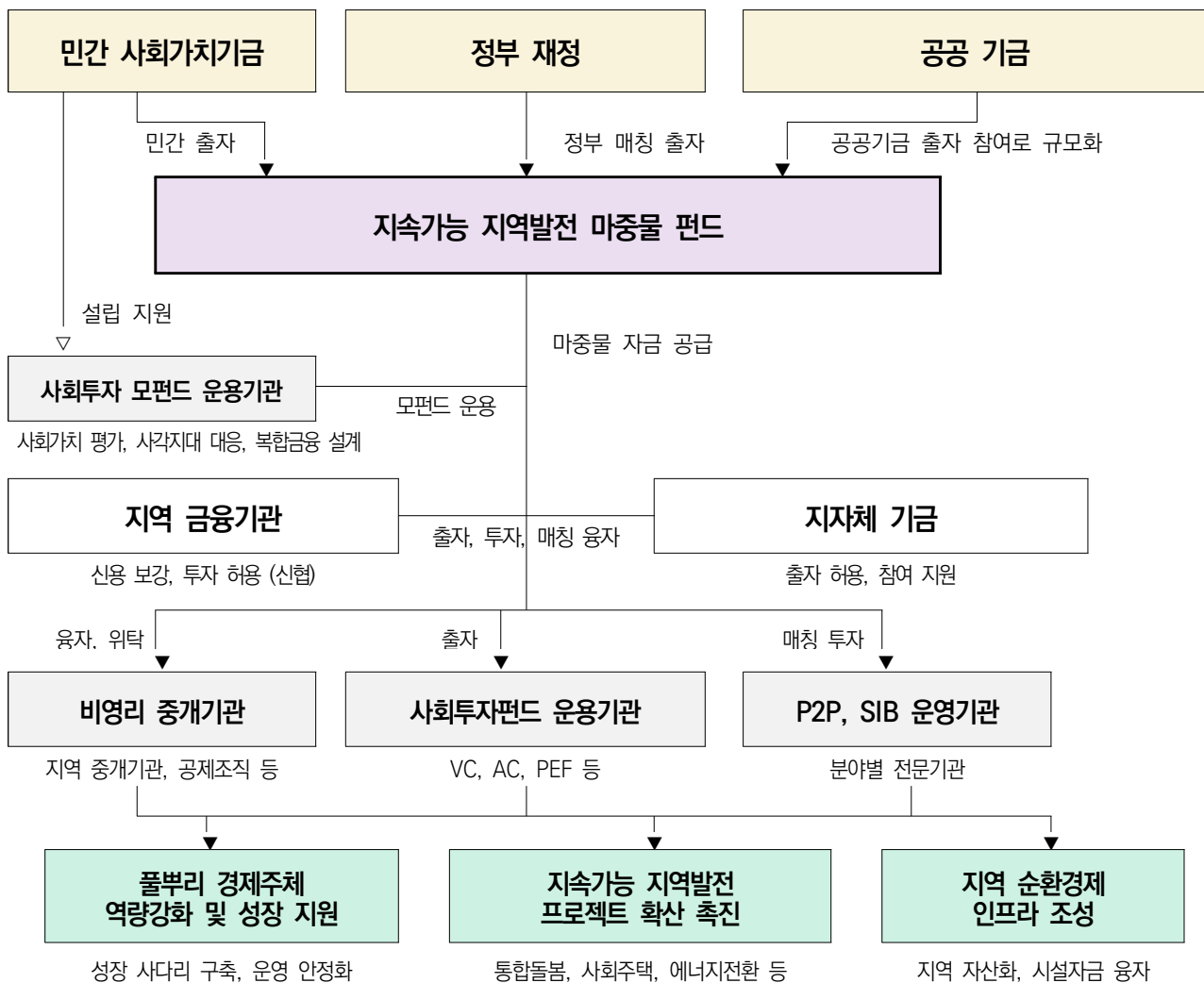
-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 지역발전 마중물 펀드」 조성 및 운용
 - 사회투자 목적으로 공익재단 등이 운용 중인 민간 사회가치기금에 정부가 매칭 출자하여 마중물 펀드 조성
 - 사회가치평가 및 사각지대 대응이 가능한 사회투자 모펀드 전문 운용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마중물 펀드 운용 위탁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휴면예금 등 공공기금 출자 참여를 통해 중앙에서 공급하는 마중물 펀드 규모화

○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 기금 참여로 자금공급 규모 확대, 민간 투자 참여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잘 아는 민간 중개기관이 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과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속가능 개발 사업에 공급
- 모펀드 후순위 출자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 사회투자 참여 지원
- 공익법인 사회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민관 협력 「지속가능 지역발전 마중물 펀드」를 구성해,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도하는 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1조 원 투자

- 사회가치 투자 마중물 자금 조성, 사회투자 전문기관을 통해 모펀드 방식으로 운용
- 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 기금 매칭으로 규모화
- 지역주체 역량강화, 지역금융 활성화,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3. 실행 방안

○ 예산: 1조 원

- 정부 재정 2,000억 원 (500억 원 * 4년)
- 공공 기금 8,000억 원 (2,000억 원 * 4년)
- ※ 24년 말 기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규모 약 1,800억 원

○ 제도 개선

- ‘상증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해 ‘지방기금법 시행령’ 개정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근거법 제정 및 지방정부 실행 지원
- 지자체 기금을 활용 혼합금융 방식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 휴면금융자산 활용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

[표] 주요국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현황 - EU,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구 분	기금명 (설치연도)	조성규모	특징/주요 미션
EU	소셜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2014)	2.43억 유로 (한화 약 4,000억원)	- 사회적 기업 전용 모펀드(fund of funds)로 자금공급 확대와 임팩트 성과집계 동시 구축
영국	베테리 소사이어티 캐피탈 (2012)	6.25억 파운드 (한화 약 1조 2천억원)	-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해 재무 수익과 사회성과 동시 추구 - 영국 사회투자 시장 견인
일본	JANPIA (2018)	8,000만 달러 (한화 약 1조 1,400억원)	- 휴면예금을 활용한 도매기금, 보조금 지원 - 저출산, 고령화에 초점을 둔 공익사업 지원
호주	호주 개발 투자 (2023)	2.5억 호주달러 (한화 약 2,300억원)	- 인도-태평양 지역 중소기업에 자본과 경영을 지원하는 펀드에 투자, 민간 투자 견인
캐나다	소셜 파이낸스 펀드 (2023)	7.55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7,800억원)	- 사회적 금융 시장 확대 목적으로 보조금 프로그램과 연계된 생태계 역량 강화에 주력
포르투갈	포르투갈 사회혁신 (2016)	1.52억 유로 (한화 약 2,500억원)	- EU기금을 활용해 사회혁신 분야 육성 및 생태계 구축 (역량강화, 매칭펀드, SIB 등)

- 사회투자 도매기금은 대부분 휴면예금, 정부예산, 정책 금융기관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 구조 채택
- 영국은 사회투자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민간채원 개발 및 동원에 초점을 두고 도매기금 운영
- 호주, 캐나다는 기후, 포용금융, 소수자지원 등 정책 우선순위에 맞춘 테마형 출자와 성과 연계 보상 구조를 강화하는 추세

* 출처: GSG Impact. (2024). Impact Investment Wholesalers and Fund of Funds

[표2] 나라별 휴면예금 활용 현황 - 영국, 일본, 한국

구 분	영 국	일 본	한 국
관련법 (연도)	- 휴면금융계좌법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 Act(2008년)	- 휴면예금활용법(2016년)	- 휴면예금재단법(2007년) → - 서민금융법(2017년)
총괄 조직	- Reclaim Fund Ltd(휴면예금 수탁관리) - Better Society Capital(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운용)	- JANPIA(일반재단법인 일본 민간공 익활동 네트워크)(2018년~현재)	- 소액서민금융재단(2007~2015년) - 서민금융진흥원(2016년~현재) ¹⁾
주요 대상	-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사회적 목적 조직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민간공익활동단체	-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 업 등
주요 사업	- 사회투자 도매자금 공급 - 혼합금융(보조금+융자) 운영 - Growth Fund 등 중개기관 협업사업 운영	- 아동·청년 지원, 일상생활 곤란 자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 신용대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 사회적경제기업 저리 융자
특징	- 자산동결, 배당제한 법제화 (CIC활용) - 도매-중개-수요기관으로 구조화 된 임팩트 투자 생태계 - 민간자본 유인 및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 - 사회적금융시장 성장 견인	- 예금보험기구 → 지정활동단체 → 자금분배단체 등 3단계로 공모를 통해 배분 - 분배의 형평성과 효과성 높음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 업무를 진흥 원으로 이관 -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도달성 높음

2.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으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투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투자 참여가 중요함
 - 국내에도 사회투자(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가진 공익법인들이 있지만 주무부처 등 이해관계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사회투자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존재
- 해외 사례
 - (미국) 196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PRI(Program related investment) 제도가 1990년대 공익법인에 의한 임팩트 투자 분야 성장을 뒷받침
 - (영국) 2012년 사회투자 도매기금 BSC 설립 1년 전인 2011년 Charity 법을 개정해 자선단체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를 허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2. 정책 요구안

-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 공익법인이 정관에 투융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투자/융자 등의 방식으로 주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익목적 투자제도의 정의와 요건
 - 정관에 기재된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투자 (융자, 지분투자, 보증 등)
 -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투자로, 수익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
 - * 사후적으로 수익이 실현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실현된 수익은 전액 공익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함 (투자금 회수 후 배당 및 사적 분배 금지)
 -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 방안
 -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으로 인정 (수익용 자산가액의 1% 이상 지출 의무)
 - 지분 보유 한도 적용 제외 (5%)

3. 실행 방안

○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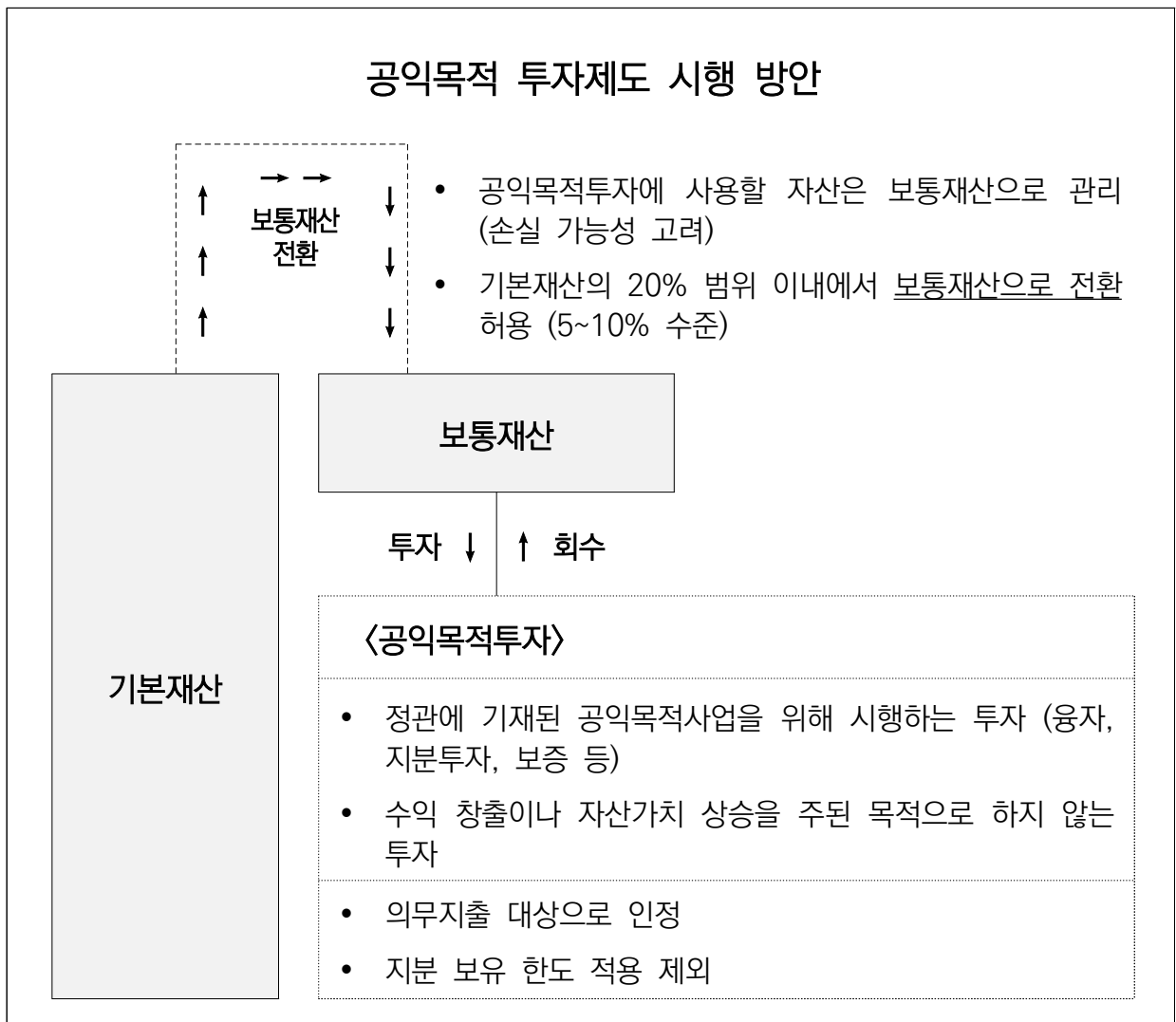
- 공익법인의 행위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상속세법이므로, 해당 법률에서 공익목적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려

☞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25. 1. 23)

○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할 ‘공익위원회’ 설치

-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은 관련 법 개정뿐 아니라 규범과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공익섹터를 활성화하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

☞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20. 6. 10)



3.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및 자금 공급 촉진

1. 현황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창업·운전자금 용자 외 다양한 자금 수요가 생겨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
 - 사회서비스 조직들은 지역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산화를 추구하지만, 영리기업 대비 수익창출력이 낮아 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사회주택 건립,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장에 적합한 금융상품 부재로 사업추진 난항
 - 사회주택은 분양이 아닌 장기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 모델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찾기 어려움
 -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해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발전 협동조합은 1인 1표 방식 거버넌스 구조와 건물/토지 담보 설정 불가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화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운영 원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규모화를 지원하는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

2. 정책 요구안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을 규모화 단계 및 임팩트 프로젝트로 확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유지·확대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고
 - 기존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에서 벗어나, 지역 자산화, 사회주택 건립,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 등 임팩트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상품 제공
- 은행이 소셜임팩트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벤처투자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A)를 완화해 적용 (400% → 100%)

4.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신설 및 ‘소셜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1. 현황 및 필요성

○ 벤처투자조합 기반 임팩트 펀드의 자금공급 범위 제약

- 현재 결성되는 임팩트 펀드는 대부분 「벤처투자법」에 기반한 벤처투자조합인데, 사회적경제 기업 중 포괄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
- (사회적)협동조합 출자 제약, 배당이 제한된 인증사회적기업 투자 기피
- 벤처투자조합 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호적인 투자수단으로 운영

☞ 참고 사례 1. 한국거래소, ESG채권 플랫폼 통해 ESG채권 공시/보고체계 마련

-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별도의 공시/보고 플랫폼 운영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발행 지원
- ESG채권 정보플랫폼 - <https://esgbond.krx.co.kr/index.jsp>

☞ 참고 사례 2.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으로 임팩트 펀드 레이블링 체계 도입

- 영국은 2023년 법률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DR)도입, 2024년부터 시행.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소비자 대상 투자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표시 기준 도입
- 긍정적 임팩트 창출을 직접 추구하는 펀드는 ‘지속가능성 임팩트’ 펀드로 표기

○ 임팩트 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세컨더리 펀드 필요

- 사회·환경적 성과 창출까지 회수 기간이 길어 자금 유동성 부족 심화
- 국내 2018년 이후 결성이 증가된 임팩트 펀드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IPO, M&A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한 Exit 수단 부족으로 자금 선순환 차질 우려
- LP, GP에 조기 현금화 경로를 제공하여 임팩트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 사회적 가치 검증이 끝난 후기 포트폴리오만 인수해 리스크·변동성 최소화

2. 정책 요구안

○ 벤처투자조합 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 신설, 별도 관리

- 벤처투자조합 중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은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으로 별도 등록 및 관리

-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등록 요건 (안)
 -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 및 관리 체계 보유,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
 - 결성액의 50% 이상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 의무
-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 마련 (규제 개선)
 -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우선출자제 활용)
 - 혼합가치 추구로 성장이 더딘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 업력 기준 완화 적용
 - * 초기기업 3년 → 5년, 창업기업 7년 → 10년
 - 신주와 구주를 함께 취득하는 블렌디드 구조 허용

○ 정부가 주도하여 ‘소셜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 기존 소셜 임팩트 펀드의 포트폴리오 중 사회적 가치 검증이 끝난 포트폴리오에 한하여 지분 매입
-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에서 아직 공익법인 등 민간 투자자 참여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정부 모태펀드가 80%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결성

○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위한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할당

-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위한 예산 할당
 - 향후 5년 간 모태펀드 정시 출자 예산의 5~10% 할당

3. 실행 방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 신설

- (시범 사업) 모태펀드 내 소셜임팩트 계정 예산을 할당해 공급하면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적극적인 해석과 지침을 통해 일부 규제 완화
- (법령 개정)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 신설

○ 소요 예산

- 모태펀드 출자 예산 5,000억 원 (1,000억 원 * 5년)
 -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예산 중 일부 할당

5.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근거법 제정 및 지방정부 시행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복지 등 공익을 위한 예산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 정부와 지자체 예산지출도 급증하고 있으나, 세수와 정부의 예산 증가에는 한계 존재
 - 그동안 정부는 정책의 성과와 무관하게 추진과정과 실행비용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패한 사업에도 세금을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해 왔음
 - 또한 정부는 결과와 무관하게 실행과정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함
- 민간의 투자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 위험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회문제에 대응
 -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본질적인 성과달성에 집중하는 정부를 만들고 관료주의와 위험 회피적인 행정시스템을 개선

2. 정책 요구안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확산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마련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민간이 리스크를 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민간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표] 국내 지자체 및 민간 SIB 시행 이력

성과 보상자	공식 사업명	사업 대상	성과 목표	성과 지표	투자자	수행 기관	평가 기관	사업 기간	사업 현황	성과
서울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	경계선 지능아동 100여명	인지능력 및 사회성 향상	아동지능지수, 행동평가척도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 UBS증권 서울지점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3년 ('16.8~'19.8)	종료	초과성과 달성 (52.7% 개선)
서울시	서울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SIB	미취업 청년 500여명	국내·외 취업/창업	취업률, 창업률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한국생산성본부, 퍼센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3년 ('20.11~'23.11)	종료	초과성과 달성 (332명 취업/창업)
경기도	경기도 SIB 해봄 프로젝트	일반 수급자 800명	탈수급 20%	탈수급율	사회적기업·비영리·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 등 61곳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3년 ('17.2~'20.2)	종료	초과성과 달성 (22.3%, 178명)
부여군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진단을 감소 위한 SIB	경도인지 장애인 300명	치매 이환율 감소	치매 이환율	행복나눔재단,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외	마음꼭 외	인제대 산학협력단	3년 ('21.6~'24.6)	종료	초과성과 달성(연평균 이환율 3.4%)
화성시	외식업 창업지원 및 생존율 개선 SIB	창업 희망자 및 기창업자	창업 및 생존율 개선	창업기업 생존가치 기반 인건비	KB손해보험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익선다다 그룹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	4년 ('24.11~'28.11)	수행 중	-
민간 (SK엠앤 서비스)	우울증 개선 및 자살예방 SIB	자살 위험군 (우울증환자)	우울증 개선	공인된 우울증 지표	IMM 자산운용 외	팀블라인드, 유쾌한 프로젝트	노드사일 오벤처스	1년 ('25.2~'26.2)	수행 중	-

[표]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9개 지자체 - 광역 8곳, 기초 11곳)

제정연도	지역	지자체	비고
2014년	1	서울시	서울시 사업시행 (2회)
2015년	1	경기도	경기도 사업시행
2017년	1	경기 수원시	
2018년	2	광주광역시, 제주도	
2019년	3	경기 안양시, 인천광역시, 충남 부여군	부여군 사업시행
2020년	5	경기 군포시, 서울 성동구, 전북 무주군, 충청남도, 경기 남양주시	
2021년	4	부산 남구, 경상남도, 경기 화성시, 경기 시흥시	화성시 사업시행
2022년	2	부산시, 경기 파주시	
	19		

6.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1. 현황 및 필요성

- 2025년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지자체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약 1,900억 원
 -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지자체는 14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6.2%에 불과
 - * (광역) 서울,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경남; (기초) 성남, 화성, 성북, 은평, 성동, 강동, 전주, 완주
 - 2025년 말 기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총 조성액의 24.8%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39.8%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예탁되어 있음
- 소액 저리융자 중심 기업 금융 모델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혼합금융 모델을 검토하면서, 기금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정책 요구안

- 지자체 기금 융자사업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중앙정부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시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공공 보증 기반 민간 은행 대출도 협약을 통해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함
 - 일부 지자체 기금에 수행기관 대표자 연대보증 요구 관행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
- 지자체 기금 채권관리 기준 개선
 -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기금 관계 법령의 채권관리 규정을 완화하여, 지자체 기금이 시장의 위험을 흡수하고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촉매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7. 지역, 업종, 분야별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부문, 지역, 업종 단위 자조기금 조성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연대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활공제운동 20년,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운영 10년 경험이 누적되고 확산되면서, 최근 3~4년 지역/분야별 자조기금 조성 시도 증가
 - * 주민협동연합회(자활공제), 재단법인 밴드(사회적경제 기업 공제), 사단법인 풀빵(노동공제)
 - * 대구사회가치금융,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제주고팡 (지역 기반 사회연대기금)
 - 자조기금은 시민사회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사업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
- 공제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제 방식의 자조/연대를 추구하는 단위들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 영위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금융업/보험업 금지, 공제사업 한정적으로 허용
 - * 협동조합 연합회 공제사업은 연합회 회원 조직만 이용 가능, 회원 조직의 조합원은 이용 불가

2. 정책 요구안

- 지역 기반 사회연대기금 육성
 - 지역사회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와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 (가칭) ‘지역사회연대기금 지원사업’ 시행
 -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공익법인 등 시민사회 조직들이 지역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과 공동 출연으로 향후 5년 간 연대기금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매칭 자금과 운영비 지원
 - 조성된 자금은 지역사회 재난 대응,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에 사용
 - 지역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 부여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참고 사례.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 기업이 공동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 안에서 지원금 매칭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 사회적경제 공제조직 활성화

- 주무부처의 적극 행정을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도 정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기관 소속 조합원으로 확대, 활성화 지원책 마련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개정(자활공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노동공제)을 통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는 공제사업 근거 마련
- 비정형, 비정규, 플랫폼노동 등 국가복지와 기업복지의 사각지대 종사자를 위한 공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

3. 실행 방안

○ 소요 예산

- 지역사회연대기금 지원사업 예산 300억 원 (15억 원 * 20개 기금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공제사업 근거 규정 개선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공제사업 근거 규정 개선
 -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 소속 조합원으로 확대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공제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자활공제와 연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활기금 활용성 증대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동공제(근로복지공제)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21.11월)

8. 신탁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허용

1. 현황 및 필요성

- 신탁은 지역 기반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
 - 2016~2024년 기간에 1천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약 2,000억 원의 자금 공급
 - 경기, 충남, 경남 등 지자체와 용자 협약을 체결해 자금을 공급하고, 전국 61개 사회적 금융 거점신탁을 통해 적극 취급 노력
 - 특히,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지원에 있어 타 금융기관 대비 강점 보유
-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용자보다 자기자본 보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탁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참여가 필요한 시점

2. 정책 요구안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신탁의 출자 허용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협력 강화

3. 실행 방안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
 -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7월)

9. 사회투자 시민참여 활성화 목적의 세제혜택 제공

1. 현황 및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시민 투자자 증가
 - 비플러스, 루트에너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오마이컴퍼니(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하는 시민 투자자 증가
 -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는 투자자임에도 벤처투자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 참고 - 벤처투자 투자자 세제혜택
 - 직접 투자 시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 100% 소득공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 시 투자금액의 70% 한도, 5천만원 초과 시 30% 한도
 - 간접 투자 (투자조합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2. 정책 요구안

-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융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회적기업 관련 조항을 개정해 포괄 범위 확대
 - 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투자/융자하는 경우, 벤처기업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현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짐

[붙임] ‘사회적금융포럼’ 현황

-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23개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임의 단체)
- 2020년 3월 21대 총선 사회적금융 관련 공약제안 모임으로 출발, 2020년 10월 운영 구조를 갖추고 출범
- 자체 조사 통해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 발행, 비전 포럼, 정책 토론회, 컨퍼런스 등 개최

(*가나다 순)

#	기관명	대표자	비고
1	(주)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2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정원각	
3	(사)나눔과미래	송경용	
4	동작신용협동조합	안재남	
5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이덕준	
6	(주)비플러스	박기범	
7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8	(사)피피엘	김동호	
9	(주)소풍벤처스	한상엽	
10	(주)아크임팩트자산운용	한성근	
11	(주)오마이컴퍼니	성진경	
12	(주)임팩트스퀘어	도현명	
13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박준홍	
14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15	주민신용협동조합	이현배	
16	(주)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17	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곽제훈	
18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이선우	
19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현대	
20	(재)한국사회투자	이종익	
21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진	
22	(재)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23	(재)함께일하는재단	최종태	